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7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0. 4. 21(화)

| 순서 | 검 토 안 건 | 제 안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 |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이필레 의원 외 7명 |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이필레 의원 외 7명
- 제안일 : 2020. 4. 13.
- 회부일 : 2020. 4. 13. (의안번호 : 20-25)

2. 제안이유

-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가용 이용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규정 신설(안 제2조 별표 1)

4. 관계법령

- 「주차장법」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

5. 참고사항

○ 공영 주차장 현황

| 계 | 노상주차장 | 노외주차장 | 시설주차장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24개소 1,978면 | 13개소 706면 | 3개소 146면 | 8개소 1,126면 |

○ 예상 수입금(전년도 5월 기준)

- 2019년 5월 수입 : 694,133,760원
- 2020년 5월 수입(시행 후) : 340,077,010원
- 전년대비 동월대비 총 51% 수입감소(1시간 무료시)

6. 검토보고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가용 이용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필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행정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「주차장법」 제9조제2항 및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2조 별표 1의 내용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면제 규정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와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

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3시간 범위
에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 피해를 돕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재난의 형태와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고 지원대상 또한 특정업종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원의 근거규정 미비로 구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,

○ 다만, 코로나19로 인한 공용주차장 요금 면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주 수입원인 주차장 운영수입의 감소로 공단의 경영악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됨으로 공단에서는 대체수입원을 찾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